

#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 :

## 사회정의와 평등을 일구어온 여성과 소수자들의 역사와 담론

일시 • 2020년 2월 6~27일,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 |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20호

한국 사회에서 반차별 담론과 운동은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의 영향과 연대의 역사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기획한 이 강좌는 페미니즘과 반차별/차별철폐/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문제의식을 여러분과 함께 탐색하고 나누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 강좌는 여성들이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에 맞서 싸워온 페미니즘의 역사와 담론을 살펴보면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절실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페미니즘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의제도 여러분과 함께 탐색합니다. 모쪼록 반차별 투쟁의 역사와 현재를 함께 살펴보는 이 강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작지만 분명하게 기여하는 실천과 연대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 • 2강 진행 : 이현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1강	2월 6일(목)	난민 혐오와 '인종주의' 페미니즘을 벗어나 김보명(부산대 사회학과) × 야스민(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2강	2월 13일(목)	<b>'여성' 범주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에서 차별을 질문하기</b>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박한희(SOGI법정책연구회)
3강	2월 20일(목)	코르셋으로부터의 해방은 어디로 연결될 수 있을까 송유진(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 몽(인권운동사랑방)
4강	2월 27일(목)	페미니즘 이슈로서 차별금지법 서영(유니브페미) × 오매(한국성폭력상담소) × 이진희(장애여성공감)

## 2강. ‘여성’ 범주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에서 차별을 질문하기<sup>1)</sup>

강의 ·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젠더 개념의 오용과 혼란

‘젠더’는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만큼 그에 대한 이해 또한 단순해지고 있다. 섹스와 젠더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쉽게 “섹스는 생물학적 성이고, 젠더는 사회적 성”이라고 답하지만 여기서 ‘사회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질문되지 않는다. 사회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타고난 성별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인 성역할이나 규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젠더라는 단어가 한국사회에 알려지고 통용된 이래 우리는 오랫동안 젠더에 대한 설명을 이러한 방식으로 접했다. 이는 젠더 개념을 단순하고 협소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부터 대중 담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오해와 오용의 문제를 야기했다.

젠더는 여전히 논쟁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이론적 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당히 빠르게 확산된 개념이기도 하다. 특히 1995년 베이징세계여성회의 이후로는 국제적으로도 ‘젠더’라는 용어의 사용이 정치와 운동의 언어로 정식화되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정작 지금 사용되고 있는 젠더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의도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로빈 라일은 <젠더란 무엇인가>에서 도로시 토머스 and 윌리엄 토머스의 ‘토머스 원칙’을 통해서 젠더를 설명한다.<sup>2)</sup> 이 원칙은 “사람들이 상황을 현실이라고 규정하면 결과적으로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인종 개념을 들 수 있다. 그간의 숱한 연구를 통해 인종은 생물학적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이 세계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인종을 구분하는 범주나 방식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이라는 것의 생물학적 실체가 있다는 믿음이 인종 개념을 현실의 실체로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젠더 역시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생물 종에는 단 두 개의 성별만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성별을 구분하는 특징은 호르몬, 염색체, 외부생식기, 내부생식기 등 특정한 분류기준에 따라서도 명확하게 두 개의 성별로만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개의 성별만을 분류 기준으로 두고 그에 따른 특징과 규범을 부여한다. 젠더는 여기에 질서와 권력을 분배하는 사회문화적, 정치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즉, 생물학적 성별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것을 규정하는 젠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젠더를 통해 이분법적 성별의 구분과 규범을 현실의 실체로 유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젠더를 ‘사회적 성’이라고 할 때 ‘사회적’이라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젠더는 단순히 ‘성별’이나 ‘양성’, ‘여러 개의 성’ 등의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다. 젠더는 성별을 의미

1) 이 강의안은 나영, 수수, ‘젠더와 다시 만나기 | 구조를 전복하는 인권운동을 위하여’, <인권운동> 2호(2019 겨울)에서 필자가 작성한 부분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로빈 라일 지음, 조애라·강문순·김진옥·박종성·유정화·윤교찬·이혜원·최인환·한애경 옮김, <젠더란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2015, pp25-29

하는 말이 아니라 성별을 구분하고 조직하는 방식, 권력을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또한 젠더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사회적 성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별을 구분하는 질서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 그야말로 ‘젠더를 트랜스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처음에는 세상이 정해진 이름에 나를 맞추어 살다가, 온 힘을 다해 맞추어 살다가 나는 오히려 나를 잃고 궁지에 몰렸다. 가까운 사람들마저 약을 내밀고, 병원 이름을 내밀고, 세상의 관념은 나를 ‘틀린 것’이라고 간단히 규정했다. 내가 십대, 이십대 시절을 보냈던 1980~90년대에는 그랬다. 선택지는 두가지일 뿐, 하나의 성별을 포기하는 일이 곧 다른 성별을 택하는 일이 되어버렸고, 나는 둘 중의 하나가 되기 위해 참 많이도 버둥거렸다. 지금이야 다양성을 존중하는 일이 범세계적인 추세가 되었고, 그러한 흐름 덕분에 사람들이 ‘존중하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절에는 모든 인간을 비슷하게 만드는 데 온 사회가 몰두해 있었다. 목표 지향적인 시스템이 대부분 그러하듯 인간은 도구가 되고, 도구는 활용하기 편리할 때에만 그 존재 의미가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_김비, ‘나에게 오십은 ‘트로피’였다’

### 페미니즘은 왜 젠더를 이야기해 왔는가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생물학이 운명은 아니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학습된다는 개념을 기본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이 성역할은 남성의 권력과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억압자인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차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패권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억압자가 되는 것이다. ‘남자는 적이다’라는 주장은 오직 남성이 남성으로서의 패권적 역할을 수용하는 한에서만 진실이 되는 것이다.”

\_앤 코트, <레즈비어니즘과 페미니즘>

“여성은 훌륭하다’라는 개념이 성취하는 것은 억압이 우리에게 부여해온 최고의 특질들(누구에게 최고인지?)을 유지해 여성을 정의하는 일이고, 이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범주인 ‘남성’과 ‘여성’에 대해 급진적으로 질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계급들처럼 계급을 타파하고자 싸우는 대신 ‘여성’이라는 계급 안에서 ‘여성’을 방어하고 강화하기 위해 싸우도록 만든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특별함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안일하게 개발하도록 만들어, 수동성(더 정확히는 정당화된 공포)과 싸우는 일이 우리에게 긴요할 때, 그 수동성을 ‘비폭력’이라고 여기게 만든다.”

\_‘누구도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모니크 비티그

젠더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성별은 그 사람의 시민권과 속성을 결정짓는 구분을 의미했다. 즉, ‘생물학적 성별’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특정한 염색체나 여성으로 구분되는 생식기와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감정이 풍부하다거나 모성을 지니고 있다거나 타인을 잘 돌보고 섬세하다, 논리적 판단력이 부족하다, 육체적으로 약하다, 남성에 비해 성욕이 적다, 남성에게 성적 끌림을 느낀다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였던 것이다. 오랫동안 히스테리는 여성의 자궁이 몸 안을 돌아다니다가 머리로 가서 일으키는 질병이라는 믿음이 존재했고, 프랑스에서 여성 참정권을 반대한 근거는 여성이 월경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성별 범주가 단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의미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경제와 사회통제의 근간에 놓인 문제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때문에 보부아르는 사회에서 여성의 ‘생물학적’ 속성이라고 믿는 것들이 여성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타자로서 여성에게 요구된 것이고, 여성들을 그 범주 안에서 길들여 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위에 인용한 모니크 위티그는 보부아르의 문제의식을 이어 페미니즘이 여성이라는 범주에 다른 긍정적 의미의 가치체계를 부여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여성’이라는 존재의 생물학적, 자연적, 본질적 특성이라는 인식으로 되돌아오는 이상 이성애를 바탕으로 한 정치경제적 관계에 종속된 계급으로서의 여성 범주를 해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젠더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관심은 여성이라는 범주를 더 공고히 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범주와 그에 연동되는 이성애 중심주의의 ‘정치경제적’ 속성을 폭로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젠더는 오히려 이러한 관심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젠더의 의미를 협소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를 ‘양성’으로 대체하고,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 gender-based violence’을 ‘여성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inst women’과 같은 의미로 이해한다. 그러나 ‘젠더’는 단순히 성별의 구분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양성’으로 대체할 수 없고, ‘여성에 대한 폭력’만을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의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폭력의 양상과 사회구조적 맥락을 협소하고 단편적으로 다루게 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의 한 양태이다. 여성이 더 높은 비율로 폭력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단지 여성이라는 지정성별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젠더화 된 구조 속에서 여성을 사회적으로 규정짓고 통제하는 방식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일련의 사건이 아니라 교육, 노동, 주거,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친 구조적 젠더화의 누적된 모순이 드러나는 결과로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삭제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만 다룰 경우 대상도 협소해질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책도 피해자 지원이나 신고센터 마련, 가해자 처벌 강화 등 법과 제도를 통한 조치를 반복하는 수준에만 머물게 된다.

두 번째 문제로는, ‘양성’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젠더’는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문제로 이해하는 양상이 있다. 또는 젠더를 곧 트랜스젠더에 관련된 문제로 간주한다. 일례로 “‘젠더’라고 하면 트랜스젠더(와 50개가 넘는 성별정체성)까지 포함되니 ‘양성’이라고만 해야 한다”거나,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는 성소수자를 포함하느냐의 차이이다”, 혹은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결국 같은 의미이니 필요에 따라서 (‘젠더’나 ‘성평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발을 피해서) 사용하면 그 뿐”이라는 식의 태도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양성’을 ‘생물학적’, ‘본질적’인 전제로 두고 ‘젠더’는 이에 덧붙여진 또 다른 성별 구분 체계로 이해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젠더는 ‘양성’에 덧붙여지는 성별 구분 체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별의 범주와 역할을 규정짓고 이를 유지시켜가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라는 점에서 ‘양성’이라는 전제 자체를 젠더화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성평등’은 여성, 남성과 ‘다양한 성소수자’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작동 방식으로부터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구조를 바꿔나가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와 연동된 또 하나의 문제로 최근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젠더를 박살내자”고 말하면서 사실상 트랜스젠더를 반대와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젠더’를 박살내자고 하면서도 젠더를 통해 유지되는 사회적 통제와 구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구조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개인들을 공격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시스템 여성이나 남성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용모나 역할을 거스르는 것만으로 젠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반면, 트랜스젠더는 그 시스템에 복무하고 젠더 구조를 강화하는 이들로 치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젠더가 단지 용모나 역할 수행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과 삶의 전 영역에서 개인의 생존과 삶의 방식을 좌우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 따라서 자신이 정체화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로 살아가라는 요구 자체가 이미 젠더화 된 폭력이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문제들을 관통하는 문제로서 섹슈얼리티를 섹스와 젠더에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단순히 분리시키는 문제가 있다. 일례로 성폭력에 대해 다룰 때 섹슈얼리티를 섹스와 젠더에 종속시키는 문제를 볼 수 있다. 성폭력은 시스젠더 이성애자 남성과 여성 간에 발생하는 문제로 전제하고, 남성 섹슈얼리티와 여성 섹슈얼리티를 전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섹슈얼리티가 젠더의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젠더에 온전히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섹슈얼리티를 젠더에 지나치게 종속적으로 배치하게 되면 성적 관계, 성적 폭력, 성적 노동, 성문화 등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역동과 욕망의 문제를 삭제해 버리거나 제대로 다룰 수가 없게 된다. 성폭력이 단순히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임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젠더화 된 권력관계를 통해 섹슈얼리티를 특정한 방식으로 억압·통제하거나 길들이는 사회적 구조에 관한 문제이며, 섹슈얼리티 자체를 섹스와 젠더에 따라 본질적인 것으로 다루어서는 곤란하다. 한편에서는,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단순히 분리시키면서 젠더 문제는 시스젠더-이성애자-여성의 차별과 피해에 관한 문제로, 섹슈얼리티는 ‘성소수자’의 차별과 피해에 관한 문제로 배치하는 태도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결국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섹슈얼리티를 섹스와 젠더에 종속시키는 문제와도 연동된다.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각기 독립적으로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니면서도 상호 연동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트랜스젠더인가? 여자끼리 있어야만 안전한가?

### 안전에 대한 감각을 다시 세우기

‘모럴패닉’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 용어는 1960년대 청소년 하위문화 집단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불안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회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집단에 대해 드러내는 상식 이상의 적대적 반응을 지칭한다. 또한 모럴패닉은 위험을 제공한다고 간주되는 소수에 대한 공중의 강렬한 반감 표출을 동반하며 동시에 공권력을 통해 위험요소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까지 포함한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모럴패닉은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 미디어와 사회가 범죄자들을 사이코패스나 소아기호증을 가진 병리적 인물들로서 그들의 ‘비정상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sup>3)</sup> 중요한 점은 모럴패닉을 통해 성범죄 가해자의 70% 이상(아동 성범죄의 경우 85% 이상)이 친족이나 지인이라는 사실, 성폭력 외에도 비밀비재하게 발생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의 현실들은 계속해서 가려지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부장-남성중심적 권력 구조는 다시금 굳건하게 강화된다는 것이다. 성범죄자가 ‘비정상’, ‘변태’의 모습으로 재연되고 상상될수록 가까이 있는 구조는 성찰되지 않고 일상속의 수많은 가해자들은 범죄자 집단과 자신들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으며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동의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모럴패닉은 미지의 공격자에 대한 공포를 유지시킴으로써 공권력과 가부장적 통제의 힘을 강화한다.

마음만 먹으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얼마든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해자들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언제나 나약한 여성과 아동이다. 여성과 아동은 어디까지나 ‘진짜 남자’인 ‘인간’들의 보호의 대상이거나 권력의 대상, 소유의 대상, 욕망의 대상일 뿐 주체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구도 속에서 가해자도, 이를 지켜줄 이도 결국엔 강력한 물리적/사회적 힘을 지닌 남성과 가부장적 권력의 국가라는 가부장-남성중심적 전제만이 다시금 재확인되는 것이다.

트랜스젠더가 여성의 공간에 들어오면 성폭력을 저지를 것이라는 류의 주장은 사실상 이러한 모럴패닉을 강화하는 주장일 뿐이다. 트랜스젠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유독 트랜스여성만을 트랜스젠더의 모습으로 재

3) 양정혜, ‘뉴스 미디어가 재현하는 범죄현실 :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프레임’, <언론과학연구> 제10권 2호, 2010.6

현할뿐더러, 애초에 트랜스젠더를 인정하지도 않고 ‘남성’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렇게 트랜스젠더를 ‘남성’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잠재적 가해자’로 상상하게 하고 여성의 위치는 피해자, 약자로만 강조할수록 여성들은 오히려 실제로 권력을 작동시키는 구조에 맞설 공간을 잃고 고립되어 갈 수밖에 없다. 여성들은 여대, 여성 전용 공간 뿐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나와 다른 존재, 다른 집단들과 일상적으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변희수 하사의 전역이 결정되었을 때 한 여군 대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남성 군인과 서로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고 지내기 때문에 생활면에서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성폭력은 ‘남자와 있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폭력을 저지르는 권력을 용인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여자끼리 있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감각이 아니라 “누구든, 어떤 공간에서든 서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감각,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확산되어야 한다.

## 젠더 개념을 통해 차별에 맞선다는 것의 의미

페미니즘은 젠더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민권이 이미 성별화, 인종화 되어 있음을 밝혔고, 가부장제만이 아니라 이성애중심주의를 통한 섹슈얼리티의 통제 구조가 시민권의 근간에 자리하고 있음을 파악해냈다. 이 사실을 상기한다면 지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말하는 언어가 다시 피해와 보호의 언어로 협소해지고 있다는 점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젠더 개념을 통해 차별에 맞선다는 것은 여성이 단지 차별과 폭력에 의한 피해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특정한 위치를 계속해서 범주화하고 존속시키는 구조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다. 따라서 젠더는 독립된 의제가 아니라 모든 의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분석 범주이다.

재생산정의 reproductive justice 운동은 젠더를 사회정의의 위한 분석범주로 다루고 있는 운동의 좋은 사례 중 하나이다. 1990년대 후반에 미국의 흑인 여성과 라틴 아메리카계 이주 여성, 아시아 여성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재생산 정의 운동은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낙태죄의 위헌성을 확인한 1973년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한계를 파악하고 사회정의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했다. 이들에게 법적 정의의 한계 내에서 구성되는 권리는 쉽게 확인되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삶의 터전에서 언제나 쫓겨날 수 있고 인종적, 우생학적 이유 등으로 불임시술이나 양육권 박탈, 심지어 강제 단종까지도 겪어야 했던 이들에게는 임신중지 뿐만 아니라 출산도, 양육도 자기결정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개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젠더 부정의는 성별 뿐 아니라 인종, 이주, 종교, 주거, 노동, 환경 등의 문제와 언제나 결부되어 있었다. 따라서 재생산정의 운동은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문제를 넘어, 모든 이들이 자신의 성관계, 성교육,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 가족구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른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침해당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사회정의의 조건을 만드는 데에 관심을 둔다. 당연히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 또한 재생산정의 운동의 중요한 의제가 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재생산정의 운동의 기본과제가 된다.

다른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볼 수 있다. 노동인권의 영역에서 여성인권의 문제를 다룰 때 이를 단지 여성노동자가 겪는 성희롱이나 성차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노동 구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젠더 구조와 이성애-가족중심주의를 건드리는 문제로서 다룬다면 이는 임금노동의 영역을 넘어 비가시화, 비가치화 된 노동의 영역들과 만나고 이주, 인종, 장애,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의 영역과 만날 수밖에 없게 된다. 상품과 이윤을 생산하는 임금노동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노동력을 중심으로 노동을 위계화하며, 이를 비장애인 성인 남성 가부장의 영역으로 만들어 온 구조가 지금까지 노동에서의 젠더 체계를 근간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주 노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남성은 노동이주를 중심으로, 여성은 결혼, 서비스노동, 성산업을 통한 이주를 중심으로 비자와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젠더를 근간으로 노동과 가치를 위계화하는 구조 속에서는 권리 역시 언제나 거

주지의 국적을 지닌 정주민, 비장애인,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주어진다. 그 위치에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언제나 자신이 권리를 누릴 자격을 입증하거나 호소하게 만든다. 우리가 노동에서의 젠더문제를 다룰 때, 여성 노동자가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같은 것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생산/임금노동과 재생산/비임금노동의 위계, 성별이분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구조 내에서의 위계, 성별이분법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과 흔히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경계로 내모는 노동 구조,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 체계, 이를 통한 인종과 국적의 경계를 뒤집고 무너뜨리는 운동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의 정체성 집단으로서의 여성과 그 권리를 다루는 방식을 넘어, 젠더화 된 구조의 공간을 뒤집는 운동을 모색하고 더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연결하며 그 속에서 여성의 권리 또한 새롭게 위치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매애는 우리의 무기이며, 우리를 계속 전진하게 하는 페미니스트 운동의 응답이다.

3월 8일은 우리의 날이다. 정치적 메시지를 지닌 세계적이고 혁명적인 날이다.

오늘, 3월 8일, 세계의 모든 여성들은 페미니스트 총파업에 초대되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복수(plural)이다.

우리는 다양하다. 우리는 시골과 도시의 거주자이며, 노동 시장과 가정 모두에서 일한다.

우리는 집시들이고, 이민자들이고, 인종차별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는 모든 연령에 있고, 우리는 레즈비언, 트랜스, 바이섹슈얼, 인터섹슈얼, 퀴어, 이성애자이다

우리는 심지어 오늘 여기에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살해되고 감금되어 있는 여성들이다.

우리 모두는 여성(THE WOMEN)이다.

우리는 오늘 함께 세상을 멈추고 우리에게 가해진 모든 폭력에 대하여 큰 소리로 외친다.

"참을 만큼 참았다!!"

침략, 굴욕, 소외와 배제를 중단하라!

...

우리의 구호를 "단 한명도 더 잃을 수 없다"(Ni Una Menos)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의 성적이고 정서적인 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

우리는 성소수자혐오를 규탄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제도적 수준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모두 여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하다.

\_2018년 세계 여성의 날 여성 총파업 선언문

(원문 <http://hacialahuelgafeminista.org/international/>)

## 2강. ‘여성’ 범주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에서 차별을 질문하기

토론 · 한희 (SOGI법정책연구소)

### 사례하나 - 문화재청 한복 가이드라인 인권위 권고

“피진정인에게, 향후 성별표현을 이유로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을 한 사람이 고궁 무료관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궁·능 한복착용자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1162100·18진정0026700(병합) 결정문 중

2013년부터 문화재청은 한복을 입은 사람에 대해 고궁, 종묘 등의 관람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실시해왔다. 이후 복식에 맞지 않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2015년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각 고궁 관리소에 배포했다. 그런데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은 사람만이 무료 관람 대상이었다. 즉 여성은 저고리에 치마, 남성은 저고리에 바지를 입은 경우에만 관람료가 면제되었다. 2017년 한 차례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여기에 더해 “궁궐의 품격에 맞는 복식을 착용할 것”이라는 문구를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의해 같은 한복을 입었음에도 무료관람을 하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정체성에 따라 자신이 입고 싶은 한복을 입었음에도 성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람료 면제를 못받았고, 트랜스젠더가 아니더라도 커플끼리 옷을 바꿔입은 경우나 그 외 여러 이유로 성별과는 다른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문제는 궁·능 직원에 의해 자의적인 성별판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입장 시 별도의 신분증 검사를 안 하는 상황에서 직원은 주로 입장객의 외모를 보고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었는지를 판단했다. 성별에 따라 어떤 외모와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성별고정관념을 국가가 앞장서서 강화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96명의 진정인들이 집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변 공익변론센터, 소수자인권위원회가 대리한 해당 진정은 이 가이드라인이 성별, 성별정체성 이유로 한 차별임을 주장했다. 그런데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묘한 일이 발생했다. 인권위에서 진정인들 중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를 구분하여서 둘 사이에 겪은 피해 정도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심지어는 이 사건을 트랜스젠더 진정인에 대한 피해로만 구성하여,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구분은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의 성별정체성의 발현의 한 형태로서 법적성별과 다른 성별의 한복을 입은 사람과 이벤트로서 즐기기 위해 한복을 입은 사람이 입장 시 느끼는 부담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의 문제는 누가 더 부담을 느끼느냐가 아니었다. 국가기관이 성별에 맞는 옷차림과 외관을 설정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문제였으며, 이는 그 자체로 성차별에 해당하는 일이고 이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인권위와의 미팅을 가지며 설명했고,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해 받는 정체성은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가

위 한복 가이드라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차별을 이야기함에 있어 특정 정체성을 가진 집단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만일 위 사건을 진정함에 있어 진정인을 트랜스젠더로 구성하고 성별이분법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이들이 받는 피해만을 강조했다면, 그렇게 해서 당초 인권위가 생각한대로 트랜스젠더 차별 없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권고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된다면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을 입은 사람은 무료입장을 위해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개선방식이 성별이분법적인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을 전혀 평등하게 만들지 않음은 분명하다.

물론 때로는 차별과 억압의 구조 속에서 서로 다른 개인, 집단들이 겪는 서로 다른 차별경험을 드러낼 필요도 있다. 앞서의 한복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진정인들은 참여이유가 크게 ‘정체성에 따른 한복을 입고 싶어서’, ‘자신의 성별표현에 따라 한복을 입고 싶어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한복을 입고 싶어서’, 이렇게 3가지로 나뉘었고 이들 각각이 집단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세심히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의 차별경험만을 본질화하고 이것만을 강조할 경우 각각의 차별경험을 만들고 존속시키는 구조의 문제는 삭제되고, 이는 오히려 차별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화장실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는 2013년 콜로라도 시민위원회가 6살 트랜스여성의 여성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면서 촉발된 ‘소위 화장실 전쟁’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장을 한 남성’이자 ‘성폭행 가해자’로 상정하고 ‘무기력한 여성’들을 이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출생증명서, 나아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거나 발의되기도 했다<sup>4)</sup>.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성별을 분리하는 법안들이 제정되고 발의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이 트랜스젠더들의 화장실 이용을 어렵게 만들었음은 분명하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다 욕설, 나아가 물리적 폭력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트랜스젠더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2016년 5월 월마트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짧은 머리의 시스젠더 여성이 다른 여성으로부터 욕설과 꺼지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발생했다. 그녀가 트랜스젠더로 오인받았기 때문이다<sup>5)</sup>. 짧은 머리의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중 경비원에게 체지당하는 일들도 있었다. 여성들만의 공간을 지키려는 분리와 배제 속에서 생물학적/법적 성별과 성별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여성들로 역시 배제와 폭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는 결론적으로 모두에게 ‘안전’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화장실을 만들어냈다.

결국 특정 개인, 집단이 겪는 피해를 강조하고 이를 본질화하는 방식으로는 차별의 구조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발제자의 말처럼 젠더를 통해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는 여성을 단지 피해자로서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범주화하고 존속시키는 구조에 맞서야 한다.

##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이야기해야 할 지점들

2018년 소위 ‘예멘 난민 사태’ 당시 여성 유저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다. 주된 논지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난민들이 들어오고,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을 자유롭게 선택하

4) 가령 인디애나 주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서 말하는 생물학적 여성은 ‘하나 이상의 X염색체를 갖고 Y염색체가 없는 사람’이고 남성은 ‘하나 이상의 X염색체와 Y염색체를 가진 사람’이다.

5) “Woman mistaken for transgender harassed in Walmart bathroom”, newstimes, 2016. 5. 16.

로 위협해진다는 이야기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미 보수개신교 등 혐오선동세력들 역시 주장해왔던 일이다. 그런데 최근의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학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른 주장들이 나왔다. 바로 차별금지법 자체는 제정하되 여기서 ‘성별정체성’은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해 온 보수개신교 등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결이었다.

여기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성별정체성의 삭제가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려는 것은 분명하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성별정체성 삭제에 대한 주장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배제를 넘어서는 함의들이 존재한다. 성별정체성은 안되지만 성별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성별과 성별정체성을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사유로 보는 것이다. 즉, 성별은 여성, 성별정체성은 트랜스젠더라는 각각의 정체성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트랜스젠더가 지정성별과 다른 정체성, 표현을 가짐으로써, 성별이분법적인 구조 속에서 벗어남으로써 겪게 되는 차별의 문제는 성별과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남게 되는 차별금지사유로서의 성별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는 생물학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의 성별, 발제자가 말한 젠더와 구분되는 양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차별금지사유를 납작하고 본질적인 무언가로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목표에 반하는 것은 명백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차별금지법이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특정 소수자들이 겪는 피해와 연결된 소수자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인식에 맞서, 차별의 구조가 존재하고 그에 맞서서 모든 이의 권리 보장으로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왔다. 그렇기에 이러한 주장에 맞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단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넣어야 한다는 것을 넘어 차별금지사유가 포함되는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논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련의 사태들을 겪으며 우리 앞에 남겨진 과제라 할 것이다.

- 1)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각각 여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1:1 대응하는 사유가 아니다.
- 2) 개개의 차별금지사유는 소수자의 위치를 한정시키는 구조, 즉 성별을 매개로 ‘여성’을 종속시키는, 성적지향을 매개로 ‘이성애’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지정성별과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자 분석범주이다.
- 3) 그렇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복합차별은 단지 각 정체성 집단의 차별경험이 이중, 삼중으로 중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한 사람의 정체성이나 경험이 분리되지 않은 채 전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sup>6)</sup>.
- 4) 피해의 경험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차별금지법이 요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운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

6) 진경(2016),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④] 복잡한 차별 현실, 차별금지법에 담기”, 인권오름.